

청주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1나57678 판결 [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청구의 소]

재판경과

청주지방법원 2022. 1. 20 선고 2021나57678 판결

청주지방법원 2021. 10. 15 선고 2021가단62617 판결

전문

원고, 피항소인 A종중

피고, 항소인 망 B의 상속인 V

변론종결 무변론

판결 선고 2022. 1. 20.

제1 심판결 청주지방법원 2021. 10. 15. 선고 2021가단62617 판결

주문

1. 이 사건 항소를 각하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 망 B의 상속인 V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원고에게, 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C, D은 별지 목록 1항 내지 5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각 1/3 지분에 관하여, 피고 B 및 제1심 공동피고 D, E은 별지 목록 6항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각 1/3 지분에 관하여, 각 2021. 8. 2.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주위적으로,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이 사건 소 중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.

예비적으로,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,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항소의 적법 여부

피고 망 B의 상속인 V가 제기한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펴본다.

가. 관련 법리

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,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 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,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,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 무효이며, 그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(대법원 2015. 1. 29. 선고 2014다34041 판결 등 참조).

나. 판단

1) 기록에 의하면, 원고가 2021. 7. 28. 망 B와 C, D, E을 공동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소를

제기하였는데, 피고 망 B는 1987. 8. 6. 이미 사망한 사실, 제1심법원이 소장에 기재된 주소로 소장 부분을 송달하여 2021. 8. 2. 친척인 D이 이를 수령한 사실, 위 피고가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무변론 선고기일을 지정하여 2021. 10. 15.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취지의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, 그 판결 정본을 같은 주소로 송달하였는데, 조카인 W이 2021. 10. 22. 이를 수령한 사실, 위 피고의 상속인들 중 V가 2021. 11. 3. 제1심판결 중 위 피고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.

2)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피고 B를 상대로 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 무효이고, 상속인 V가 2021. 11. 3.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며, 상속인들의 소송수계나 당사자표시정정신청도 허용되지 아니하므로,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다.

2. 결론

피고 B의 상속인 V가 제기한 항소는 부적법하고,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따라 변론 없이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 판사 이성기, 판사 안재훈, 판사 최유나

별지